

『문화예술경영학연구』 논문심사규정

제1조 (논문의 심사 및 게재)

『문화예술경영학연구』에 게재될 모든 논문은 다음의 심사평가 판정절차를 거쳐 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

1. 본 학회의 ‘논문심사 평가기준’에 근거한 각 전공 영역별 심사위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와 평가
2. 심사위원의 심사평가를 바탕으로 한 위원회의 판정과 심의 의결

제2조 (논문심사위원 위촉)

1. 편집위원장은 모든 투고 논문을 전공별로 분류한 뒤 편집회의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을 선정·위촉한다.
2. 심사위원의 수는 논문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평가를 위하여 논문별 동일분야 전공자 3인으로 한다.
3. 심사 관련 수당은 내부 지침에 의거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3조 (논문심사의뢰)

1. 편집위원장은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해당 논문과 소정의 ‘논문심사서’를 보내 그 심사를 의뢰한다.
2.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심사 의뢰 시 투고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조치한다.

제4조 (심사평가)

1. 논문 심사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한 뒤 심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2. 논문에 대한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의 결정에 따라 편당 3인의 심사위원들이 선임되어 비공개로 수행된다.
3. 각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보고서에 1) 연구주제의 적절성, 2) 연구 방법 및 논의 구성의 타당성, 3) 연구의 체계성, 4) 논문의 독창성, 5) 연구 결과의 의의(학문적·실용적 기여도), 6)논문 작성 규정의 준수 정도 등의 기준에 따라 논문의 심사내용을 기술하고 심사결과를 ‘게재가’, ‘수정 후 게재가’, ‘수정 후 재심사’, ‘게재불가’로 판정하여,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.
4. 편집위원회는 ‘게재가’로 판정한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하며, ‘수정 후 게재가’로 판정한 논문은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 수정하도록 한다.
5. ‘수정 후 재심사’로 판정된 논문과 관련, 투고자가 심사의견에 따라 수정이나 보완한 원고를 다시 제출한 경우, 편집위원회는 수정이나 보완(수정·보완대조표)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, 그 논문의 게재여부를 심의한다.

6. 심사결과에 대해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게재논문을 최종 확정한다.

제5조 (게재 논문 판정)

1. 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의 심사평가 결과를 수합한 뒤 심사위원의 심사평가를 토대로 아래 기준에 따라 투고논문의 게재여부를 판정한다.

제6조 (논문심사 판정 후 처리)

1.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 평가 내용과 함께 각 투고자별로 통보한다.
2.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다.
3. 논문게재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 위원회는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- 아래 -

『문화예술경영학연구』 판정 기준

심사위원1	심사위원2	심사위원3	종합판정
게재가	게재가	게재가	게재가
게재가	게재가	수정 후 게재가	게재가
게재가	수정 후 게재가	수정 후 게재가	수정 후 게재가
게재가	게재가	수정 후 재심사	수정 후 게재가
수정 후 게재가	수정 후 게재가	수정 후 게재가	수정 후 게재가
게재가	게재가	게재불가	수정 후 게재가
게재가	수정 후 게재가	수정 후 재심사	수정 후 게재가
게재가	수정 후 게재가	게재불가	수정 후 재심사
수정 후 게재가	수정 후 게재가	수정 후 재심사	수정 후 재심사
게재가	수정 후 재심사	수정 후 재심사	수정 후 재심사
수정 후 게재가	수정 후 게재가	게재불가	게재불가
수정 후 게재가	수정 후 재심사	수정 후 재심사	게재불가
게재가	수정 후 재심사	게재불가	게재불가
수정 후 재심사	수정 후 재심사	수정 후 재심사	게재불가 (수정후재심사)
게재가	게재불가	게재불가	게재불가
수정 후 게재가	수정 후 재심사	게재불가	게재불가(수정후재심사?)
수정 후 재심사	수정 후 재심사	게재불가	게재불가
수정 후 게재가	게재불가	게재불가	게재불가
수정 후 재심사	게재불가	게재불가	게재불가
게재불가	게재불가	게재불가	게재불가